

알고 지냅니다.

상속세의 과세방법

이진웅
〈공인 회계사〉

1.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기 위해선 우선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시가란 각기의 재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었을 때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데 현실적으로는 상속개시전이나 그 후 수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이 있다든지, 감정원으로 부터 감정을 받았던지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시의 시가를 알기 매우 어려우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가. 유형고정자산

① 토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에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현재에는 시가에 거의 접근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건물

원칙적으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며,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안에 있는 아파트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다.

③ 시설물, 기타 구축물

토지, 건물에 포함되어 평가된 것을 제외한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건축 시점에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상품, 재고품 등 동산

동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의 처분가액으로 한다.

⑤ 서화, 골동품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나. 무형재산의 평가

① 타인에게 매입한 무형재산

매입한 무형재산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 시점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매입하지 아니한 무형재산

스스로 창출한 무형재산은 그 종류별로 평가방법이 다르며 각 종류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영업권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식에 의한다.

$$\left(\frac{A}{2} - B \times C\right) \times D$$

A: 상속개시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B: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

C: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D: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년수



b.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권리자인 본인이 위의 권리를 스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 기간 만기일까지 각 연도의 보상금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c. 저작권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인세와 기타 보상금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d. 광업권, 채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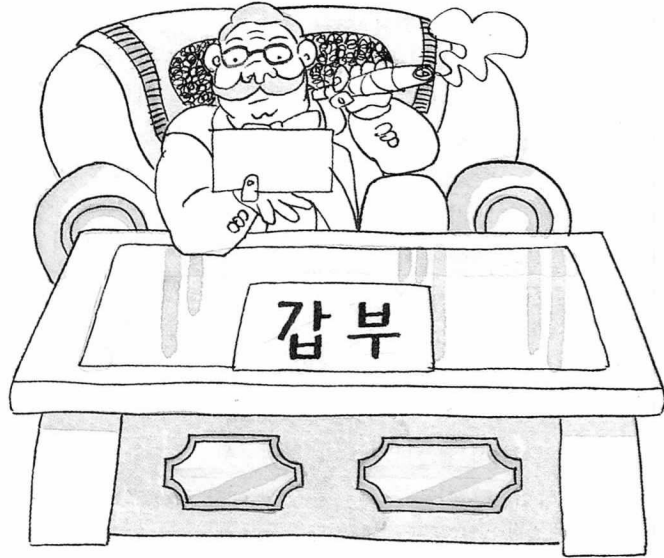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 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조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다. 유가증권의 평가

① 상장된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전 1개월간의 증가의 평균과 상속개시일의 증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평균액 계산에서 상기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로 당해 평균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그 증자 또는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 부터 상속개시일 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②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a, b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a. 평가산식

$$1\text{주당가액} = \left(\frac{E}{F} + \frac{G}{H} \right) \div 2$$

E: 당해법인의 순자산액

F: 발행주식 총수

G: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 가중 평균액

H: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단, 사업 개시전의 법인,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상속 개시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해서 휴업중인 법인, 폐업·청산중의 법인은 이 산식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b.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

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③ 국채, 공채, 사채의 평가

위 채권의 평가는 실제 매입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다.

④ 예금, 적금의 평가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예입총액과 기간이 경과한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⑤ 대부금

대부 채권의 평가는 원금과 상속 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

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

라. 평가방법의 예외

상기의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등기된 전세금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0%)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2. 상속세 공제제도

상속세는 상속당시의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가. 일반공제

a.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미납부하였거나 납부의무가 성립된 제세공과금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금액.

b.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장례일 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이 없더라도 2백만원까지 인정되며 2백만원 초과시에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장례비용에는 묘지구입

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채 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액

a. 기초공제

6천만원

b. 인적공제

○ 배우자; 600만원 × 결혼년수 + 1억원

○ 자녀; 1인당 2천만원(2인에 한한다)

○ 미성년자; 20세가 될 때까지 연간 3백만원씩 (2인에 한한다)

○ 연로자; 1인당 3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장애자-1인당 3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이러한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때만 적용된다.

c. 주택상속공제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의 가액)을 공제하며 또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과 5년이상 성년의 직계비속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90%의 금액을 추가공제할 수 있다.

d. 농지, 초지, 산림지 공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 초지, 산림지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한 다음의 농지, 초지, 산림지가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동 상속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이를 당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9천평이내의 농지

○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

○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조립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e. 한 도

상기의 주택상속공제와 농지, 초지, 산림지의 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넘지 못한다.

f. 산림소득공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립한 산림으로서 조립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전액 공제한다. ☞